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3년 4월 15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12월 2일, 2014년 3월 14일, 2015년 3월 13일, 2016년 4월 29일, 2016년 12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 2016.12.19.>
3. 성별의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 ③ “피해자”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19.>
- ④ “가해자”란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19.>
- ⑤ “신고인”이란 성폭력의 발생을 상담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19.>
- ⑥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19.>
- ⑦ “당사자”란 피해자와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신설 2016.12.19.>

제3조(적용범위) 적용대상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 즉, 본교에 소속된 교수, 강사, 직원, 조교, 학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되, 피신고자 또는 피해자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13.12.2.>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피해자는 본 규정이 정한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개정 2016.12.19.>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19.>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처리과정에 있는 한, 가해자 또는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상담센터 <개정 2007.2.27., 2009.10.22., 2013.2.25.>

제6조(설치) 본교 내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구성원들에 대한 안내·신고·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상담센터 양성평등팀을 설치한다.
<개정 2007.2.27., 2009.10.22., 2013.2.25., 2015.3.13>

제7조(상담원의 자격) 성희롱·성폭력 상담원은 성폭력 상담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 2016.12.19.>

1. <삭제 2016.12.19.>

2. <삭제 2016.12.19.>

제8조(양성평등팀의 업무)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22., 2015.3.13>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보고
3.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4.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교육
5.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8조의2(상담원 교육·훈련 지원) 본교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신설 2016.4.29>

제2절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처리를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학사부총장, 교목실장, 학생처장, 상담센터장,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며, 총장은 다음 각 호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7.2.27., 2009.10.22., 2013.2.25., 2014.3.14., 2015.3.13., 2016.12.19.>

1. 전임교원 2인 <개정 2015.3.13., 2016.12.19.>

2. <삭제 2016.12.>

3. 피해자가 교수일 경우 교수 2인,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2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2인<개정 2016.12.19.>
- ② 전체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 ③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 ④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12.19.>
- ⑥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에 한하여 교체한다.<신설 2016.12.1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유고시 참여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에 관한 사항
4. 상담센터의 보고 청취 <개정 2009.10.22., 2013.2.25.>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조 제2호, 제3호의 처리에 관하여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성희롱 및 성폭력 판단 지침)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성희롱 및 성폭력 판단지침을 제정 및 정비할 수 있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5조(신고 등) ① 신고는 피해자 및 제3자도 가능하며,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6.12.19.>

- ②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피해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③ 상담센터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0.22., 2013.12.2., 2016.12.19.>
- ④ 상담센터 이외의 부서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센터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 <개정 2016.12.19.>

제16조(조사와 상담) ① 상담센터는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09.10.22., 2016.12.19.>

- ② 상담센터장은 접수된 사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개정 2009.10.22., 2016.12.19.>

③ 당사자는 조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상담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 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2., 2016.12.19.>

⑤ 조사와 상담시 그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6.12.19.>

제17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8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사과 요구

2. 가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피해자 보호조치<개정 2016.12.19.>

4.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의 친인척(8촌 이내)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성희롱·성폭력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기피신청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사·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와 통지)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의) <삭제 2016.12.>

제22조(사후 감독)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3.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